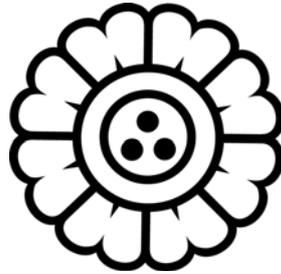


불기2562(2018년)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시 : 불기2562(2018)년 8월 8일(수) 13시

장소 : 포교사단 교육관(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 불기2562(2018)년 제 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 일 시 : 2018. 8. 8(수) 13시
- \* 장 소 : 포교사단 교육관
- \* 의 장 : 선거관리위원장

## ○ 회 순 ○

1. 개회선언 ----- 의장
2. 삼귀의례 ----- 일동
3. 반야심경 ----- 일동
4. 의장인사 ----- 의장
5. 전 회의록 보고 ----- 사무국장
6. 심의 의안 상정 ----- 의장

- 1) 제10대 서울지역단장 후보자 및 추천인 자격 심의의 건
- 2) 제10대 서울지역단 감사 후보자 자격 심의의 건
- 3) 선거인명부 심의의 건

7. 공지사항 ----- 사무국장
8. 사후서원 ----- 일동
9. 폐회선언 ----- 의장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멀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해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 I. 전 회의결과 및 활동보고

## 1.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2018.7.17)

### ■ 안건 1 : 제10대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선거 공고의 건

- 제안사항 : 제10대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선거의 세부지침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안(지역단) : 정관 및 규정에 준함
2. 선거일정(지역단) : 정관 및 규정에 준함
3. 선거인 명부 관련(지역단) : 정관 및 규정에 준함
4. 선거인 자격(지역단) : 정관 및 규정에 준함
5. 추천방법 : 복수추천 불가
6. 차기 회의 일정 (후보자 자격 심의 및 지역담당 선관위원 선정)
7. 입후보자 등록기간 (20일 이내)
8. 선거입후보자 자격(포교사단규정 제31조, 제32항, 제35조)

	임원자격 공통요건 (규정 제26조 1항)	비 고
1	전문포교사	전산 확인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전산 확인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 지역단 임원분담금 납입확인서 제출 - 미납분은 공고기간 내 납입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2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전산 확인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범죄사실확인증명서 제출

9. 추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양식에 준함

- 결의사항 : 원안대로 결의함

## 2. 제10대 서울지역단장 및 감사선고 공고



### 제10대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 선거공고(안)

포교사단 정관 제18조 ①항 및 포교사단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거 일시

- 8월 14일(화) 19:00

#### 2. 입후보자 자격

- 포교사단 규정 제31조, 제32조 ①항, 제35조 ①항에 의함

####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7월 18일(수) 09:00 ~ 8월 6일(월) 18:00

#### 4. 입후보자 등록서류

- 포교사단 지역단 단장 및 감사 입후보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단장), 기타  
※ 공정선거를 위해 추천서는 본 공고문 첨부양식과 등록기간 내 추천분에 한하여 유효함

#### 5. 선거권자 자격

- 선거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

#### 6. 입후보자등록 장소

- 선거관리위원회(포교사단) 사무국

#### 7. 투표장소

- 포교사단 지역단 사무국

#### 8. 선거관리는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3조 각 호에 의한다.

불기2562(2018)년 7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덕진



## Ⅱ.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의안 상정

### 1. 심의사항

#### ■ 안건 1 : 제10대 서울지역단장 후보자 및 추천인 자격심의의 건

- 제안사항 : 아래와 같이 제10대 서울지역단장 선거에 접수된 후보자와 자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서류 별첨>

지 역 단	자격번호	법 명	성 명	비 고
서 울	A3-44-0085	여여성	정청현	포교사 5기(18년차), 전문포교사 10기
64세, 팀장2년, 지역단 부단장 4년 등 운영위원 총6년				
포교사단 임원분담금, 포교회관건립기금 납부여부 : 완납				

- 결의사항 :

#### ■ 안건 2 : 제10대 서울지역단 감사 후보자 자격 심의의 건

- 제안사항 : 아래와 같이 제10대 서울지역단 감사선거에 접수된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서류 별첨>

지 역 단	자격번호	법 명	성 명	비 고
서 울	A3-52-0011	명 선	박종화	포교사 13기(10년차), 전문포교사 7기
64세, 팀장2년, 총괄팀장2년 전문위원 4년 등 운영위원 총8년				
포교사단 임원분담금, 포교회관건립기금 납부여부 : 완납				

지 역 단	자격번호	법 명	성 명	비 고
서 울	A3-50-0062	보현행	이정기	포교사 11기(12년차), 전문포교사 6기
63세, 팀장2년 역임				
포교사단 임원분담금, 포교회관건립기금 납부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결의사항 :

## ○ 주요직책 자격요건

직책	자격요건	나이	연임	기타
포교사단 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 포함하여 5년 이상 계속 활동 -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 (정관 제17조, 제50조 2항)	45세 이상	1회에 한함	전문포교사
지역단 단장				
포교사단 부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17조 1항)	40세 이상	연임 가능	
전문운영위원				
포교사단 감사			1회에 한함	
지역단 부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50조 2항)		연임 가능	
총괄팀장				
직할팀장				
지역단 감사			1회에 한함	
상벌위원	- 팀장경력 포함 5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6조)		연임 가능	
선거관리위원	-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1조)			
포교활동 팀장	- 경력 1년 이상 단원, 해당팀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규정 제20조 1항)			35세 이상

### ※ 임원자격 공통요건 (규정 제26조 1항)

1. 전문포교사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2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범죄사실확인증명서 제출)

**임원선임의 제척사유** : 현 운영위원이 입후보할 때, 본인은 투표권 없음 (규정 26조 2항)

<입법취지: 투표권은 운영위원에게만 있으므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 아닌 사람이 출마할 경우, 운영위원만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 **경력산정** : 현재의 소임자가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활동경력은 당해 임기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한다. (규정 27조 1항)

### ■ 안건 3 : 선거인 명부 심의의 건

- 제안사항 : 아래와 같이 제10대 서울지역단장 및 감사 선거 선거인명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의사항 :

### 서울지역단 제10대 단장 선거인 명부

< 선거공고일(7.18) 6개월(1.18)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 >

- 단장 및 감사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규정 제27조2항3호)  
 ※ 2018. 1. 19 이후 임명된 운영위원은 투표권과 추천권이 없음

NO	직 책	법 명	성 명	임기개시일	투표권	참고
1	지역단장 직무권한대행	법 천	장봉수	2018. 1. 1	X	7.27 해임
2	직할총괄 행사지원팀장	도안심	권선희	"	O	
3	직할총괄 음성포교팀장	죽 림	지창기	"	O	
4	직할총괄 홍보팀장	보광화	김현숙	"	O	
5	동부총괄 군1팀장	효 당	전호균	"	O	
6	동부총괄 군2팀장	안심도	한재순	"	O	
7	동부총괄 군3팀장	보 성	이태원	"	O	
8	동부총괄 군5팀장	보리광	손경자	"	O	
9	동부총괄 교정교화팀장	보 명	정덕진	"	O	
10	동부총괄어린이청소년1팀장	수정문	김순희	"	O	
11	동부총괄어린이청소년2팀장	금 원	김광섭	"	O	
12	동부총괄 지역봉사1팀장	보현행	이추월	"	O	
13	남부총괄 군1팀장	현 명	문병만	"	O	
14	남부총괄 군2팀장	인 경	김승길	"	O	
15	남부총괄 군3팀장	무 주	김영웅	"	O	
16	남부총괄 교정교화팀장	자법심	송인숙	"	X	팀장 사임
17	남부총괄어린이청소년팀장	법률행	이금분	"	O	
18	남부총괄 지역봉사팀장	금강행	김수연	"	O	
19	서부총괄 군1팀장	서 명	송보영	"	O	
20	서부총괄 군2팀장	무 심	박성영	"	O	

21	서부총괄 군3팀장	효 성	김태달	"	O	
22	서부총괄 교정교화팀장	무 염	김홍선	"	O	
23	서부총괄어린이청소년팀장	정법수	변현숙	"	O	
24	서부총괄 지역봉사팀장	천수성	허미숙	"	O	
25	북부총괄 군1팀장	성 수	서정각	"	O	
26	북부총괄 군2팀장	정진향	김정희	"	O	
27	북부총괄 군3팀장	도 각	이용문	"	O	
28	북부총괄 교정교화팀장	선덕장	김 순	"	O	
29	북부총괄어린이청소년팀장	법 원	정봉효	"	O	
30	북부총괄 지역봉사1팀장	법성심	양현숙	"	O	
31	북부총괄 지역봉사2팀장	도안심	김정숙	"	O	
32	직영총괄 경찰포교팀장	금 당	고중현	"	O	
33	직영총괄 통일포교1팀장	혜안심	홍미옥	"	O	
34	직영총괄 통일포교2팀장	보리원	안복숙	"	O	
35	직영총괄 염불포교팀장	법 운	장덕수	"	O	
36	직영불교문화해설포교팀장	개 운	최우영	"	O	
37	포교사단 단장	대 혜	윤기중	"	O	
38	포교사단 감사	자 운	하용이	"	X	감사
39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도 광	한성웅	"	O	
40	포교사단 부단장	혜안심	장용숙	"	O	
41	포교사단 부단장	진여성	강예자	"	O	
42	포교사단 부단장	신심행	고미애	"	O	
43	정책1 전문운영위원	만 법	정광현	"	O	
44	정책2 전문운영위원	법 공	이은갑	"	O	
45	포교1 전문운영위원	수 압	강성석	"	O	
46	문화 전문운영위원	여려화	우진숙	"	O	
47	교육 전문운영위원	혜 명	박경옥	"	O	
48	좋은인연 전문운영위원	수경지	박윤재	"	O	
49	무소유 전문운영위원	마니행	이명숙	"	O	
50	디지털대 전문운영위원	법 료	양성홍	"	O	

운영위원(선거인)	총 50 명
선거권 미충족자	3 명
선거권(투표권)자	47 명

## 선거절차

- 개회선언
- 삼귀의례
- 반야심경
- 임시의장선출 (현 단장이 연임일 경우)
- 의장인사
- 입후보등록상황 설명 (입후보자 보고) - 선관위원이 설명
- 선거진행절차 설명 - 선거관리위원이 설명

1. 선관위원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선거시작
2. 선거인단 본인 확인 후 서명
3. 투표용지 교부 - 절취부분 선관위원이 별도 보관
4. 투표소에서 도장 기표 (정해진 도장으로 기표토록 유도)
5. 투표함에 투입
6. 투표용지 / 절취종이 개수 동일한 지 확인
7. 개표
8. 발표

- 입후보자 정견 발표
- 지역단장 선거 후 감사선거
- 당선증 수여
- 당선자 소감 발표 (단장, 감사)
- 공지사항
- 사홍서원

## 선거 관련 규정 정리

### ■ 포교사단 정관

#### 제4장 임 원

##### 제15조 (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수석 부단장 1인
3. 부단장 4인 이내와 지역단장
4. 전문운영위원
5. 감사 2인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제 1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자격)

- ① 본단의 임원은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5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관리에관한령, 포교사단정관의시행에관한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② 본단 단장은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제 18조 (선임)

- ① 단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 ② 단장추천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하며, 이들 중 1인을 수석 부단장으로 지명한다.
- ③ 단장은 지역단장을 겸할 수 없다.
- ④ 지역단장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단의 단장이 추인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 ⑤ 지역단장 유고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다만, 징계 등에 의한 궐위시에는 포교원의 지도와 본단의 관리 하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 ⑥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운영위원회

##### 제26조 (구성)

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15조의 임원
2. 각 지역단 대표 2인(지역단 부단장)
3. 본단설립 법인대표

4. 본단 산하단체 대표

## 제 9 장 감 사

### 제38조 (구성·임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39조 (선임)

감사 선임은 본 정관 제18조 1항을 준용한다.

## 제 10 장 지역단

### 제 3 절 지역단 임원

#### 제49조 (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지역단장 1인
2. 지역단부단장 4인 이내(수석부단장 1인 포함)
3. 총괄팀장 7인 이내
4. 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 제 50조 (임기와 자격)

- ① 지역단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제16조를 준용한다.
- ② 지역단 임원의 자격은 본 정관 제17조를 준용하되,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3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이어야 한다.

#### 제51조 (선임)

- ① 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단 단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지역단감사는 본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 ② 지역단부단장은 지역단장의 추천으로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 ③ 총괄팀장은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 ④ 임원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 제54조 (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포교활동팀장, 지역단소속 본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제7장 포교사단 임원선임

#### 제26조(임원선임 공통요건) <신설>

##### ① 임원자격

1. 전문포교사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2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 ② 임원선임의 제척사유

정관 제25조 제1호를 적용한다.

※ 정관 제25조(총회결의의 제척사유)

임원과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제27조(포교사단 단장)

단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 한다.

##### ① 자격요건

정관 제1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5세 이상의 자. 단 현재의 소임자가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활동경력은 당해 임기가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한다.

##### ② 선출방법

1. 단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후보 신청서를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복수추천자는 무효 처리한다.

2. 단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개별회의로 개최하고 의장은 단장이 된다. 단, 단장이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3. 단장 및 감사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4. 선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부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5. 단장선출 운영위원회는 대리참석 또는 위임할 수 없다.

6. 단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10월 중에 실시한다.

③ 단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이 대행하며 3월 이내에 보선한다. 단 보선된 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회의 단장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한다.

④ 유고 단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후임 단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수석부단장이 대행한다. 수석부단장도 결원시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 **제28조(포교사단 부단장)**

① 자격요건

정관 제1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0세 이상의 자

② 선출방법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 **제30조(감사)**

① 자격요건

규정 제28조 제1항에 준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단장선출방법에 준한다. 단 추천서는 제외한다.

## **[제8장 지역단 임원 선임] <신설>**

### **제31조(지역단 임원선임 공통요건)**

규정 제26조를 적용한다.

### **제32조(지역단장)**

① 자격요건

포교사단 단장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단장선출방법에 준하며, 지역단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11월 중에 실시한다.

### **제33조(지역부단장)**

① 자격요건

정관 제50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전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 있는 40세 이상의 자

② 선출방법

정관 제51조 제2항에 의한다.

### **제35조(감사)**

① 자격요건

규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선출방법

포교사단 감사 선출방법에 의한다.

## **제10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① 선관위 위원장 1인
- ② 선관위 부위원장 2인
- ③ 선관위원 15인 이내

#### 제39조 (위원의 선임)

- ① 선관위원은 본단단장 추천 1인과 각 지역단장이 1인씩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로 단장이 임명한다.
- ②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원회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 제40조 (임기)

선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된 지역단의 추천을 받아 본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41조 (자격)

본 단의 단원으로서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 활동 중인 40세 이상인 자

#### 제42조 (위원의 해임)

선관위원이 정관 제19조 1항 1, 2, 3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장이 해임한다. <※정관 제19조 1항 해임사유 : 1.본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단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제43조 (직무)

선관위는 단장, 감사 지역단장 및 지역감사 선거를 관리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실행한다.

1. 본단 및 지역단 선거일 공고(재, 보선 포함)
2. 후보자 등록 공시 및 결격사유 유무 확인
3. 선거인단 명부 관리 및 자격 확인
4. 추천자 자격 확인
5. 투개표 관리
6. 당선자 확인증 교부
7. 선거 결과보고 (선거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
8. 선거일은 선거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9. 입후보자의 자격 및 성원 미달의 경우 7일 이내로 재공고한다.

#### 제44조 (회의 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장(지역단장 포함)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소집한다.
- ② 단장(지역단장 포함) 결원이 있을시 결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집한다.

### 포교사단 제10대 선거관리위원 명단

	소 속	직 책	법 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포교사단	위 원 장	금 강	임덕신	010-5255-2238	
2	대 구	부위원장	청 도	김종윤	010-8859-7181	
3	강 원	부위원장	청 담	김복진	010-3398-9855	
4	서 울	선관위원	여 산	송교성	010-3214-2084	
5	부 산	선관위원	각 운	하갑봉	010-4280-9278	
6	대전충남	선관위원	백 송	민병수	010-2424-5256	
7	광주전남	선관위원	정각심	권말려	010-9887-6833	
8	전 북	선관위원	담 화	박운성	010-3656-4250	
9	충 북	선관위원	법성화	김영매	010-8822-4138	
10	인천경기	선관위원	지 산	홍종석	010-9126-2111	
11	경 남	선관위원	적 명	강병태	010-3588-4308	
12	울 산	선관위원	법 문	김영래	010-3851-9359	
13	제 주	선관위원	보 광	김성도	010-5647-9966	
14	경 북	선관위원	운 산	권용일	010-3022-1008	